무배당 건강인우대특약 약관

금융감독원 보감총 1112-00176(2000. 12. 22)
판매개시일: 2001. 1. 1

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1 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

(1)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보험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 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주계약”, 보험계약자는 “계약자”, 보험회사는 “회사”라 합니다)

(2)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(3)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(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)로 합니다.

(4) 주계약이 해지(解止)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 2 조 [피보험자의 가입자격]

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가입적격자(加入適格者)로서 적어도 최근 1 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(이하 총칭하여 “흡연(吸煙)”이라 합니다)하지 아니하고, 최대혈압치(mmHg)가 110~139(mmHg)이며 BMI (Body Mass Index)수치(kg/m²)가 20.0~27.9 인 자(이하 “우량체”라 합니다)로 합니다.

제 3 조 [특약의 감액]

(1)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(2)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회사에서 정한 주계약의 최저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며 감액된 이후 납입해당분부터 할인 전 주계약의 보험료로 변경됩니다.

제 2 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 4 조 [회사의 책임개시일]

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. 그러나 제 1 조 [특약의 체결 및 효력]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청약한 날 이후부터 책임을 집니다.

제 5 조 [보험료율의 적용]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.

제 3 관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

제 6 조 [해약환급금]

(1) 제 3 조 [특약의 감액] 제 1 항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주계약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.

(2)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 7 조 [배당금의 지급]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.

제 4 관 특약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

제 8 조 [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]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(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) “비흡연고지서”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
제 9 조 [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]

(1)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8 조 [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]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약의 적용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(이하 “표준체보험료”라 합

니다)보다 적은 이 특약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(이하 “우량체보험료”라 합니다)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과 관계없이 “우량체보험료”의 “표준체보험료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.

(2) 제 1 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0 조 [흡연상태 변경통지]

보험기간 중 30 일 이상 피보험자가 흡연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제 11 조 [흡연상태 변경의 효과]

(1) 회사는 제 10 조 [흡연상태 변경통지]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(이하 “정산차액”이라 합니다)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, 계약자는 우량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(보험기간, 납입기간,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등)으로 산출된 표준체보험료를 향후 납입하여야 하고, 이 특약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됩니다. 단,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.

(2) 계약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“우량체보험료”의 “표준체보험료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.

(3)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0 조 [흡연상태 변경통지]의 통지의무를 30 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 1 항 및 제 2 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(4)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 2 조 [피보험자의 가입자격]에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 4 조 [회사의 책임개시일]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,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.

제 5 관 기타사항 등

제 12 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

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